

# 공 고

김제중앙중학교 제2021-1호

김제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김제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월 20일

## 김제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

### 김제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예고

#### 1. 개정사유

- 가. 초·중등교육법,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, 2020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내용에 맞도록 우리 학교 규정을 개정
- 나. 우리 학교 규정의 일부 문구를 개선·보완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가.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

- 당초: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2개 구성·운영
- 변경: 선출관리위원회 1개로 통합·운영

##### 나.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

-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, 임용, 평가 등에 관한 사항

##### 다. 위원회의 시정명령 신청 신설

- 운영위원회 의결로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 신청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2021. 1. 27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 또는 운영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, 연락처

다. 보낼 곳

- 주소: 김제시 남북9길 52(우편번호 54411)
- 전화번호(문의): (063) 547-5011
- 팩스: (063) 547-0747

### 제출 양식

규정 예고안		수정안		수정 이유	
작성자	성명		연락처		

4. 개정안: 김제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(개정 전문)